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9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
-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체하여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시행(법률 제9629호, 2009.4.22)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가 소멸되었기에
-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